

제269회 임시회
2008.4.24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
심사 보고서

2008. 4. 24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4월 7일
- 회부일자 : 2008년 4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8.4.18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농정본부장 김정수)

가. 제안이유

-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하고자 각종 첨단 분석 장비를 구비하였기에,

- 시험·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,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(안 제3조)
 - 의뢰자는 신청서와 시험·분석용 검체를 연구소에 제출
 - 시험·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시는 설계서를 제출
- 수수료 및 징수방법 (안 제4조)
 - 수수료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
 - 용역의뢰 수수료 : 용역의뢰 설계서상의 견적가격으로 결정
 - 수수료 납부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
- 수수료 면제(안 제6조)
 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수산단체가 의뢰 시 수수료 면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전문위원 : 최영배)

-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,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구비하여, 각종 수산물 등에 대한 시험·조사 및 분석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수산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실정을 감안하여 합당한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에 의뢰하는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'시험'이란 수산물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의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·연구(용역)를 통해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.
2. '조사'란 수산물과 관련한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 영향 등을 조사·연구(용역)를 통해 그 내용을 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'분석'이란 수산물 또는 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.

제3조(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) ①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에 시험·조사 및 분석(이하 "시험 등"이라 한다)을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필요시 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을 연구소장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소에 수산관련 시험·조사(연구용역)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의뢰서에 시험·조사기준 및 방법 등 시험·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설계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 시료의 분석 수수료는 「국립수산과학원시험·조사및분석의뢰규칙」 제5조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. 다만, 항생물질 시료의 분석 수수료는 「수산물품

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0조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수수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 한다.

③ 시험·조사(연구용역)의 수수료는 설계서에 의한 견적가격에 의하며, 시험·조사 시 시료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견적가격에 포함 시킨다.

④ 시험 등의 사본 발급수수료는 「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0조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납부금액이 일십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구소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⑥ 제7조제1항에 의한 시험 등의 거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성적서 교부 등) ① 연구소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성적서 교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험 등의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, 성명 등 오자·탈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.

③ 시험 등의 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본 발급 의뢰서를 소장에게 제출한다.

제6조(수수료 면제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 포함) 또는 수산단체가 그 기능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

제7조(시험 등의 거부) ① 제3조의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없다.

1.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 2. 연구소가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
-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,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검체 등의 처리)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설계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험·분석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·분석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(제3조제4항 관련)

| 시험·분석 종별 | 처 리 기 간 | 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수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| 18일 | 수산물 1kg |
| 수산물의 항생물질 검사 | 18일 | 수산물 1kg |
| 수산물의 중금속 검사 | 10일 | 수산물 1kg |
| 수산용수 분석 | 10일 | 수산용수 4ℓ |
| 바이러스성 질병검사 | 13일 |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 |
| 세균성 질병검사 | 13일 |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 |
| 기생성 질병검사 | 13일 |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 |
| 조균류 및 사세포 검사 | 13일 |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 |

[별표 2]

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 교부대장(제5조제1항 관련)

[별지 제1호서식]

시험·조사 및 분석 의뢰서(제3조제1항 관련)

[별지 제2호서식]

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접수증(제3조제3항 관련)

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|
| 접수번호 _____ | | |
| 건명 | | |
| 민원인 | | |
| 접수일 | 년 | 월 |
| 수수료 | 원정 | |
| 처리기간 | 년 | 월 |
| | 시험·조사 및 분석 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. | |
| | 년 | 월 |
| | 일 | |
|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장 | | |

[별지 제3호서식]

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(제5조제1항 관련)

성적서 교부 번호 :

시험·조사 및 분석 종목명 :

의뢰인 주 소 :

성 명 :

상 호 :

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5조
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.

1. 검체내용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|---------------|--|
| 시험 등의 종목 (검 체 명) | | 의뢰목적 | | 접 수 일 접수번호 | |
| 채취 장소 | | | | | |

2. 시험결과

년 월 일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장

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물에 한하여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·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와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 사본 발급 의뢰서(제5조제3항 관련)

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|
| 주 소 | | 상 호 명 | |
| 성 명 | | 원본발급 번 호 | |
| 시험 등의 종목 | | | |
| 매 수 | | | |

상기와 같이 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의 사본 발급을 의뢰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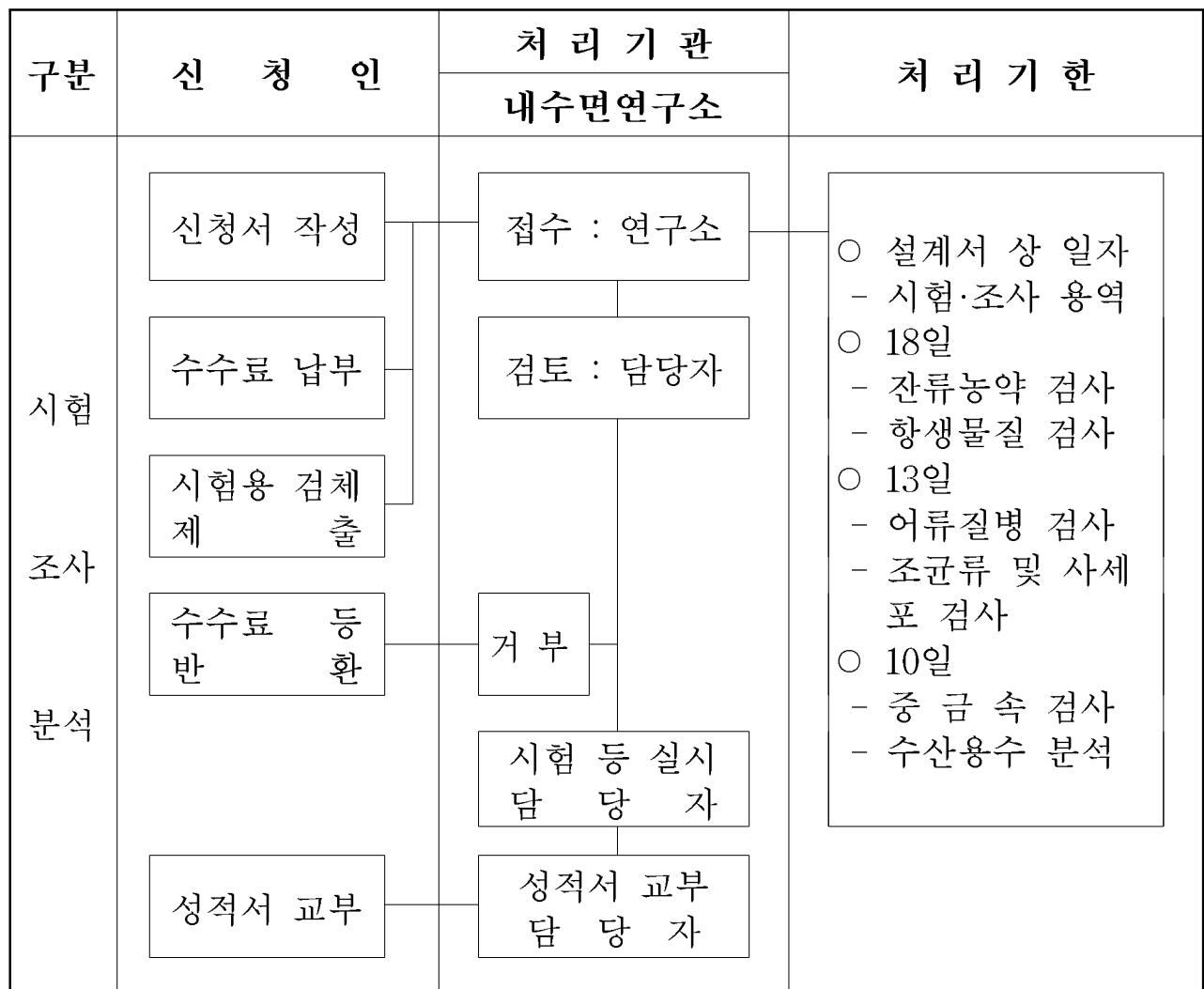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의뢰인 주 소

성 명 (서명또는인)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장 귀하

업무처리 흐름도



관 계 법령 발췌

【국립수산과학원 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규칙】

제5조 (수수료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·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7.3.29, 2004.8.7>
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. <개정 1981.11.3, 1988.2.13, 1997.3.29>

제8조 (결과서 교부등) ① 원장은 시험·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81.11.3, 1988.2.13, 1997.3.29>

② 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분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1997.3.29>

□ 국립수산과학원 시험·조사 및 분석 수수료고시

국립수산과학원 시험·조사 및 분석 의뢰규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.

[별표]

시험·조사 및 분석수수료

| 구 분 | 종 목 | 세 부 종 목 | 단 위 | 수수료(원)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-|-----|
| 1. 수산용수 분석 | 일반지표 성 분 | 수온, 비중, 탁도, 색상, 취기 | 각1성분 | 300 | |
| | | PH, 중발산유물 | " | 500 | |
| | | 산도, 알칼리도, 경도, 용존산소, 화학적 산소요구량, 유화물, 유화수, 소염분, 질산성질소, 아초산성질소, 인산염, 규산염, 부유물질, 감열감량 | " | 1,000 | |
| | 중 금 속 함 량 | 수온, 카드뮴, 구리, 아연, 납, 철 | " | 2,500 | |
| | 기타특수 화학물질 | 페놀, DDP, BHC, 알드린, 파라치온 | " | 3,000 | |
| 7. 수산생물의 병리 검사 | 양식생물 | 바이러스성 질병검사 | 각 1건 | 20,000 | |
| | | 세균성 질병검사 | " | 5,000 | |
| | | 기생성 질병검사 | " | 5,000 | |
| | | 조류 및 사세포 검사 | " | 5,000 | |

【수산물품질관리법】

- 제 44조 (검정) ① 수산물의 품질·규격·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2.21, 2008. 2. 29>
-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인력 또는 검정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검정의 항목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[시행일:2008.12.22]

【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】

- 제70조 (수산물등의 검정절차 등)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·수산가공품 및 이식용수산물(이하 이 조에서 "수산물등"이라 한다)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산물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등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산물검정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등의 검정항목은 별표 15와 같다. 다만, 검정신청인이 검정을 요구하는 항목이

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검정할 수 있다.

- ④ 수산물등의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1~11호

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 한다.

5.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

| 구 분 | 검 정 항 목 | 단 위 | 1항목당 수수료(원)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|
| (6) 항생물질 | 옥시테트라싸이클린, 옥소린산(정성) " (정량) | 1항목 | 20,000 |
| | 말라카이드그린, 시프로플록사신, 엔로플록사신, 플루메퀸, AHD, AMO, AOZ, SEM | 1항목 | 40,000 |

주)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.